

# CONTENTS

교재의 사용법	008p
생각의 틀 정리	011p
기출문제 풀이	015p
교재를 마무리한 후 – 스스로 하는 기출분석	147p
<b>지문 목차 – 하루 세 지문</b>	
각 Day별로 어떤 지문이 있는지 정리해두었습니다. 학습 계획을 짜거나 복습하실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공부 스케줄에 맞게 하루 세 지문을 푸셔도 되고, 하루 두 지문을 푸셔도 됩니다.	
<b>DAY 1</b>	016p
[사회(법)] 2017.09 [35~39] ‘법인격 부인론’	
[인문] 2021.12 [16~21] ‘북학론과 중국 경제’	
[기술] 2021.06 [25~28] ‘영상 안정화 기술’	
<b>DAY 2</b>	026p
[인문] 2017.11 [16~20] ‘가설 검증법과 지식의 구분’	
[과학] 2020.11 [26~29] ‘이식’	
[사회(법)] 2019.06 [22~26] ‘사법’	
<b>DAY 3</b>	032p
[과학] 2017.11 [33~36] ‘반추 동물’	
[인문] 2020.09 [21~26] ‘영화와 역사의 관계’	
[사회(법)] 2021.06 [29~33] ‘ICT 산업’	
<b>DAY 4</b>	040p
[기술] 2020.09 [38~41] ‘스마트폰의 위치 찾기’	
[인문] 2018.06 [16~21] ‘율곡의 수기치인’	
[사회(법+경제)] 2018.11 [27~32] ‘정책 수단과 오버슈팅’	
<b>DAY 5</b>	050p
[인문] 2020.11 [16~20] ‘베이즈주의’	
[사회(법)] 2019.11 [16~20] ‘법률 효과’	
[기술] 2019.09 [29~32] ‘STM’	
<b>DAY 6</b>	056p
[예술] 2021.09 [20~25] ‘예술에 대한 논의’	
[기술] 2019.06 [35~38] ‘LFIA 키트’	
[사회(경제)] 2019.09 [21~25] ‘CDS 프리미엄’	
<b>DAY 7</b>	064p
[인문] 2019.11 [39~42] ‘가능세계’	
[인문] 2017.06 [20~24] ‘유비 논증’	
[기술] 2021.12 [34~37] ‘3D 합성 영상’	

## DAY 8

---

070p

[기술+예술] 2017.09 [25~30] ‘콘크리트’

[인문] 2018.09 [38~42] ‘집합 의례’

[사회(법)] 2021.09 [26~30] ‘행정입법’

## DAY 9

---

078p

[인문] 2021.06 [16~21] ‘과거제’

[사회(법)] 2020.09 [27~31] ‘점유&소유’

[기술] 2017.06 [16~19] ‘인공 신경망 기술’

## DAY 10

---

086p

[과학] 2017.09 [31~34] ‘열기관의 열효율’

[과학+인문] 2018.09 [27~32]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

[사회(경제)] 2018.06 [22~25] ‘통화 정책’

## DAY 11

---

094p

[인문+과학] 2020.06 [37~42] ‘개체성’

[인문] 2018.11 [16~19] ‘목적론’

[기술] 2018.06 [30~34] ‘DNS 스푸핑’

## DAY 12

---

102p

[사회(경제+법)] 2017.11 [37~42] ‘보험’

[예술] 2018.09 [16~19] ‘하이퍼리얼리즘’

[인문+과학] 2019.11 [27~32] ‘우주론’

## DAY 13

---

112p

[인문] 2022.예시 [5~10] ‘이원론&동일론’

[인문] 2019.09 [33~38] ‘근대도시의 삶의 양식’

[기술] 2018.11 [38~42] ‘부호화’

## DAY 14

---

120p

[예술+과학] 2017.06 [28~33] ‘음악적 아름다움’

[인문] 2019.06 [16~21] ‘서양 의학과 최한기’

[사회(경제)] 2020.06 [27~31] ‘통화 정책&금융감독 정책’

## DAY 15

---

130p

[사회(법)] 2021.12 [26~30] ‘예약’

[예술] 2022.예시 [16~21] ‘음악에 대한 동서양의 이해’

[과학+기술] 2021.09 [34~37] ‘항미생물 화학제’

## DAY 16

---

138p

[기술] 2022.예시 [30~34] ‘충전지’

[인문] 2020.06 [19~22] ‘에피쿠로스’

[사회(경제+법)] 2020.11 [37~42] ‘말랑말랑한 법(soft law)’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설 80P

-2020.11 [16~20]

㉠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⑧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가령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 있다. 반면 ㉡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가령 각 인식 주체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들과 달리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한다.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다. 이것을 베이즈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다. 베이즈주의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로서,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갑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고,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하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 보자.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갑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될 때,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이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명제들 중에는 위의 예에서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조건화 원리에 ⑥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위에서처럼 갑이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것과 관련 없는 명제 ‘다른 은하에는 외계인이 존재한다.’에 대한 그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

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⑨ 본다.

베이즈주의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⑩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⑪ 바꾸는 것도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1.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믿음의 정도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 ②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③ 믿음의 정도를 어떤 경우에 바꾸고 어떤 경우에 바꾸지 말아야 할까?
- ④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까?
- ⑤ 임의의 명제에 대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 2.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만약 을이 ㉠이라면 을은 동시에 ㉡일 수 없다.
- ② ㉠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 믿는 것은 그 명제가 거짓임을 강한 정도로 믿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 ③ ㉠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고 믿는다면 을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④ ㉡은 을의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있다고 본다.
- ⑤ ㉡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와 ‘내일 비가 온다.’가 모두 거짓이라고 믿더라도 후자를 전자보다 더 강하게 거짓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조건화 원리]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한다.
- ② 어떤 행위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도 믿음의 정도의 변화 없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준다.
- ③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는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해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지 않는다.
- ④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 ⑤ 임의의 명제를 새롭게 알기 전에 그와 다른 명제에 대해 가장 강하지도 않고 가장 약하지도 않은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인식 주체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4.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활동 기록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독서 후 심화 활동]

글의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보자.

○ 상황

병과 정은 공동 발표 내용을 기록한 흰색 수첩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수첩에는 병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병과 정은 다음 명제 ⑦가 참이라고 믿지만 믿음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다.

⑦ 병의 수첩은 체육관에 있다.

병 혹은 정이 참이라고 새롭게 알게 될 수 있는 명제는 다음과 같다.

⑧ 체육관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흰색 수첩이 있다.

⑨ 병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어떤 색인지 확인이 안 된 수첩이 병의 집에 있다.

병과 정은 ⑧과 ⑨ 이외에는 ⑦와 관련이 있는 어떤 명제도 새롭게 알게 되지 않고, 조건화 원리에 의해서만 자신들의 믿음의 정도를 바꾼다.

○ 상황

[ A ]

① 병이 ⑦와 관련이 없는 다른 명제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⑨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겠군.

② 병이 ⑨만을 알게 된다면, 그 후에 ⑦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그 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겠군.

③ 병이 ⑨를 알게 된 후에 ⑦를 추가로 알게 된다면, ⑦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⑨를 추가로 알기 전보다 더 약해질 수 있겠군.

④ 병이 ⑨와 ⑦를 동시에 알게 된다면, ⑦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⑨와 ⑦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⑦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변하겠군.

⑤ 병과 정이 ⑨를 알게 되기 전에 ⑦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면, ⑨만을 알게 된 후에는 ⑦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과 정의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없겠군.

5. 문맥상 ⑨~⑪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⑨: 어제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
- ② ⑩: 법에 따라 모든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
- ③ ⑪: 우리는 지금 아이를 봐 줄 분을 찾고 있다.
- ④ ⑫: 그는 짚었을 때 얻은 병을 아직 못 고쳤다.
- ⑤ ⑬: 매장에서 현 냉장고를 새 선풍기와 바꿨다.

##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설 84P

-2019.11 [16~20]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짊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⑦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해 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⑦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⑧ 나올 수 없다.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때의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에 을의 승낙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라 한다.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다 된다.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상회복 청구권이다.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①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 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실체법에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 ② 절차법에 강제 집행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③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④ 법원을 통하여 물리력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 ⑤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 7. ⑦, ⑧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⑦은 매도인의 청구와 매수인의 이행으로 소멸한다.
- ② ⑧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 표시가 작용하여 성립한 것이다.
- ③ ⑦과 ⑧은 ⑦이 이행되면 그 결과로 ⑧이 소멸하는 관계이다.
- ④ ⑦과 ⑧은 동일한 계약의 효과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 ⑤ ⑦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⑧에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8. ⑦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을’의 과실로 이행 불능이 되어 ‘갑’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
- ② ‘갑’은 소를 제기하여야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 ③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그림 A’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 ④ ‘갑’과 ‘을’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행 불능이 되었다.
- ⑤ ‘을’이 ‘갑’에게 ‘그림 A’를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을’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0. 문맥상 의미가 ⑧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오랜 연구 끝에 만족할 만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
- ② 그 사람이 부드럽게 나오니 내 마음이 누그러졌다.
- ③ 우리 마을은 라디오가 잘 안 나오는 산간 지역이다.
- ④ 이 책에 나오는 옛날이야기 한 편을 함께 읽어 보자.
- 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

### 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증여와 차이가 있다.

- ① 증여, 유언, 매매는 모두 법률 행위로서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한다.
- ② 증여와 유언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
- ③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다.
- ④ 증여는 당사자 일방만이 이행한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는 관계를 갖는 매매와 차이가 있다.
- ⑤ 증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서로 합치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의사 표시의 합치가 필요 없는 유언과 차이가 있다.

##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설 91P

-2019.09 [2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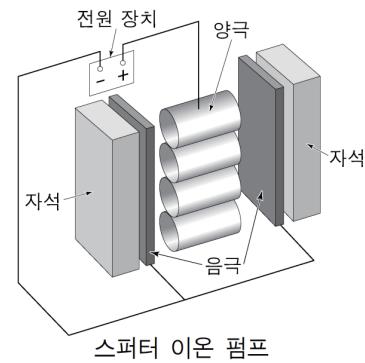
㉠ 주사 터널링 현미경(STM)에서는 끝이 첨예한 금속 팜프과 도체 또는 반도체 시료 표면 간에 적당한 전압을 걸어 주고 둘 간의 거리를 좁하게 된다. 팜프과 시료의 거리가 매우 가까우면 양자 역학적 터널링 효과에 의해 둘이 접촉하지 않아도 전류가 흐른다. 이때 팜프과 시료 표면 간의 거리가 원자 단위 크기에서 변하더라도 전류의 크기는 민감하게 달라진다. 이 점을 이용하면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에서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시료의 표면 상태는 STM을 이용하여 관찰할 수 없다. 이렇게 민감한 STM도 진공 기술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널리 사용될 수 있었다.

STM은 대체로 진공 통 안에 설치되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주변과 충돌한다. 이때 일부 기체 분자들은 관찰하려는 시료의 표면에 붙어 표면과 반응하거나 표면을 덮어 시료 표면의 관찰을 방해한다. 따라서 용이한 관찰을 위해 STM을 활용한 실험에서는 관찰하려고 하는 시료와 기체 분자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필요가 있어 진공이 요구되는 것이다. 진공이란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를 통칭하며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가 높다고 한다. 진공 통 내부의 온도가 일정하고 한 종류의 기체 분자만 존재할 경우, 기체 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통 내부의 기체 압력은 단위 부피당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에 비례한다. 따라서 기체 분자들을 진공 통에서 뽑아내거나 진공 통 내부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면 진공 통 내부의 기체 압력을 낮출 수 있다.

STM을 활용하는 실험에서 어느 정도의 진공도가 요구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분자층 형성 시간'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진공 통 내부에서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들이 관찰하려는 시료의 표면에 달라붙어 한 층의 막을 형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라 한다. 이 시간은 시료의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클수록,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높을수록 짧다. 또한 기체 운동론에 따르면 고정된 온도에서 기체 분자의 질량이 크거나 기체의 압력이 낮을수록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길다. 가령 질소의 경우  $20^{\circ}\text{C}$ , 760토르\* 대기압에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3 \times 10^{-9}$ 초이지만,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10^{-9}$ 토르로 낮아지면 대략 2,500초로 증가한다. 이런 이유로 STM에서는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  $10^{-9}$ 토르 이하의 초고진공이 요구된다.

초고진공을 얻기 위해서는 ㉡ 스퍼터 이온 펌프가 널리 쓰인다. 스퍼터 이온 펌프는 진공 통 내부의 기체 분자가 펌프 내부로 유입되도록 진공 통과 연결하여 사용한다. 스퍼터 이온 펌프는 영구 자석, 금속 재질의 속이 뚫린 원통 모양 양극, 타

이타늄으로 만든 판 형태의 음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석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 원통 모양 양극의 축 방향으로 걸려 있고, 양극과 음극 간에는 2~7kV의 고전압이 걸려 있다. 양극과 음극 간에 걸린 고전압의 영향으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형태의 궤적을 그리며 양극으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주변의 기체 분자와 충돌하여 기체 분자를 그것의 구성 요소인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킨다. 여기서 자기장은 전자가 양극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자기장이 없을 때보다 증가시켜 주어 전자와 기체 분자와의 충돌 빈도를 높여 준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양이온은 전기력에 의해 음극으로 당겨져 음극에 박히게 되어 이동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 과정이 1차 펌프 작용이다. 또한 양이온이 음극에 충돌하면 타이타늄이 떨어져 나와 충돌 지점 주변에 들러붙는다. 이렇게 들러붙은 타이타늄은 높은 화학 반응성 때문에 여러 기체 분자와 쉽게 반응하여,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를 흡착한다. 이는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2차 펌프 작용이라 부른다. 이렇듯 1, 2차 펌프 작용을 통해 스퍼터 이온 펌프는 초고진공 상태를 만들 수 있다.

\* 토르(torr) : 기체 압력의 단위.

### 1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대기압보다 진공도가 낮은 상태가 진공이다.
- ② 스퍼터 이온 펌프는 초고진공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 ③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짧을수록 STM을 이용한 관찰이 용이하다.
- ④ 일정한 온도와 부피의 진공 통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는 기체 압력에 반비례한다.
- ⑤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시료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과 무관하게 결정된다.

12. ⑦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까지 측정할 수 없다.
- ② 시료의 전기 전도 여부에 관계없이 시료를 관찰할 수 있다.
- ③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늘리려면 진공 통 안의 기체 압력을 낮추어야 한다.
- ④ 시료 표면의 관찰을 위해서는 시료 표면에 기체의 단분자층 형성이 필요하다.
- ⑤ 양자 역학적 터널링 효과를 이용하여 탐침을 시료 표면에 접촉시킨 후 흐르는 전류를 측정한다.

13. ⑦의 ‘음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전압과 전자의 상호 작용으로 자기장을 만든다.
- ②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를 흡착하는 물질을 내놓는다.
- ③ 기체 분자에서 분리된 양이온을 전기력으로 끌어당긴다.
- ④ 전자와 기체 분자의 충돌로 만들어진 양이온을 고정시킨다.
- ⑤ 기체 분자를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키는 전자를 방출한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STM을 사용하여 규소의 표면을 관찰하는 실험을 하려고 한다. 동일한 사양의 STM이 설치된, 동일한 부피의 진공 통 A~E가 있고, 각 진공 통 내부에 있는 기체 분자의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진공 통 A 안의 기체 압력은  $10^{-9}$  토르이며, 모든 진공 통의 내부 온도는  $20^{\circ}\text{C}$ 이다. (단, 기체 분자가 규소 표면과 충돌하여 달라붙을 확률은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하며, 제시되지 않은 모든 조건은 각 진공 통에서 동일하다. N은 일정한 자연수이다.)

진공 통	기체	분자의 질량 (amu*)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수(개/cm <sup>3</sup> )
A	질소	28	4N
B	질소	28	2N
C	질소	28	7N
D	산소	32	N
E	이산화 탄소	44	N

\* amu : 원자 질량 단위.

- ① A 내부에서의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대략 2,500초이겠군.
- ② B 내부의 기체 압력은  $10^{-9}$  토르보다 낮겠군.
- ③ C 내부의 진공도는 B 내부의 진공도보다 낮겠군.
- ④ D 내부에서의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A의 경우보다 길겠군.
- ⑤ E 내부의 시료 표면에 대한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는 D의 경우보다 높겠군.

## 05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88%	2%	4%	4%

### | 핵심 point |

- ① 화제 check : 비문학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보의 역할 : 모든 정보는 ‘화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바탕으로, 정보를 특정한 기준으로 카테고리화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③ 사례–원리 연결 : 모든 사례는 어떠한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독해 속도를 늦추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 ④ 〈보기〉 정리 : 〈보기〉 문제를 해결할 때, 선지를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보기〉의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10] 2019.11 [16~20] ☆☆☆☆☆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짊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약속, 그 중에서 ‘계약’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일반적인 약속과 ‘공통점’, ‘차이점’을 가지고 있네요. 공통점은 ‘의사 표시의 합치’, 차이점은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가?’라는 것. 할 수 있겠죠? ‘계약’과 ‘일반적인 약속’이 ‘비교’ 된다는 인식을 한 순간 이들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생각해야 하고, 그것이 ‘법률 효과’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평가원은 법률 효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예시’를 들어 줍니다. 만약 <>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해력 부족이 아닌 어휘력 부족일 확률이 큽니다. ‘매매’, ‘매도’, ‘매수’, ‘청구’ 등의 어휘를 확실하게 아는지 생각해 보세요. 알고 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핵심은 결국 이 예시를 원리와 연결 짓는 것입니다. 이 예시는 어떤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계약’과 일반적인 ‘약속’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시를 보니 ‘의사 표시의 합치’라는 ‘공통점’은 명시되어 있는데, ‘차이점’인 ‘법률 효과’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이 말을 예시에서 찾아줘야겠죠? 아 ‘권리와 의무’라는 것이 계약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 했는데, 이게 바로 ‘법률 효과’에 대응되나봐요! 결국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것이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약’이 ‘일반적인 약속’과 가지는 차이점을 설명했는데, 그 뒤에 예시가 나왔다면 그 예시는 당연히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겠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아니 정확히는 본인도 모르게 판단하고 있는 능력이

바로 독해력입니다. 조금 친절하게 출제한다면 마지막 문장을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인다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와 같이 써주었겠지만, 최근에 나오는 독서 지문들은 이런 내용이 의도적으로 삭제되어 불친절하게 쓰이고 있어요. ‘예시’라는 정보의 역할을 토대로 이 생각을 스스로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화제는 ‘계약의 법률효과’와 관련되겠죠?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 가지고 가 봅시다.

### | 하이라이트 문장 |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 를 갖는다.

언제나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례–원리 연결’이 ‘불친절한 서술’을 만난 문장입니다. ‘의무’, ‘권리’라는 사례와 관련된 개념을 ‘법률 효과’라는 원리와 연결지으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런 설명들이 너무 시시하게 느껴지셔야 해요. 당연한 말을 계속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법률 행위’의 정의는 자연스레 체크하고 있죠? ‘의사 표시를 바탕으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위에서 나온 ‘계약’과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 표시한 문장이 없었더라도,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해요! 이러한 ‘계약’은 ‘청구권’이라는 ‘채권’과 ‘이행 의무’라는 ‘채무’, 즉 ‘법률 효과’들을 발생시키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변제’의 정의라고 합니다. ‘법률 행위’, ‘채권’, ‘채무’, ‘변제’라는 개념들의 정의를 확실하게 체크하면 됩니다. 그

러면서 우리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도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약’과 같은 상황에서의 ‘법률 효과’에 대해서 읽고 있어요. 여기 나온 개념들 모두 ‘법률 효과’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사실상 앞 문단의 내용과 똑같은 말만 하고 있는 거죠. 이 생각들을 하면서 읽어 봅시다.

### | 하이라이트 문장 |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이 문장을 읽고, 앞에서 본 ‘계약’이 곧 ‘법률 행위’의 일종임을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문장을 읽기 전에 말이죠!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해 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뜬금없이 사례가 나옵니다. 서술이 굉장히 불친절하기는 하지만, 화제를 잡고 그 흐름에 맞춰서 읽었다면 ‘필연적으로’ 이 사례가 왜 나왔는지를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사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앞에서 말했던 법률 효과와 관련된 요소들(법률 행위, 채권, 채무, 변제 등등)을 더 잘 이해 시켜 주기 위해서겠죠. 이것을 생각하고 읽으면 어렵게만 느껴지던 이 문단이 쉽게 다가옵니다. 갑과 을의 ‘그림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통해 채권과 채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갑이 돈을 다 준 상태에서 만약 을이 갑에게 그림을 주면? 그렇죠! ‘변제’가 이루어진 것이죠. 좀 감이 잡하나요? 이렇게 사례를 원리와 붙여 읽기 위해서 화제를 신경 쓰고, 정의를 체크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불친절하네요. 처음에 ‘예를 들어’ 하나 써주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수를 맞은 상황에서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나오셨나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지 생각하려 했다면, 이 질문을 가진 채로 읽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질문을 지문에서 써줬다면 훨씬 이해하기 편했겠지만, 그런 거 없어요. 아주 불친절합니다. 우리 스스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갑이 어떻게 그림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가야합니다.

### | 하이라이트 문장 |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해 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 문단 역시 앞에서 계속 이야기한 ‘채권, 채무’라는 ‘법률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여기서 ‘을’이 ‘변제’의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까지 해 주셔야 해요. 나아가, 화제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흐름’을 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동안은 ‘법률 효과’의 발생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부터 ‘법률 효과’ 중 하나인 ‘채무’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의 상황에 대해 소개한다는 거죠! 마지막 문장을 통해 이 생각에 방점을 찍을 수 있을 것이구요.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얘기를 하네요. 일단 ‘실체법’, ‘절차법’의 정의는 체크합시다. 각각 ‘채권 내용 규정’, ‘강제 실현 가능하게 함’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네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법들은 도대체 왜 나온 거죠? 아 맞아요! 우리는 ‘갑이 어떻게 그림을 돌려받을 수 있지?’라는 물음을 가진 채로 글을 읽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이 문단의 정보들이겠네요. 이 생각을 통해 읽어 보면, 갑은 소를 제기하여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확정 받을 수 있고,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읽고 있던 ‘실체법’과 ‘절차법’을 통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하면 채권의 내용이 갖춰진 ‘실체법’을 토대로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정 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절차법’에 의거하여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이제 따로따로 노는 것 같던 ‘갑과 을의 사례’, ‘실체법, 절차법’,

‘소 제기, 강제 집행’이라는 정보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어려워 보이겠지만 ‘정보의 역할’을 생각한다는 하나의 태도만으로 해낼 수 있는 생각입니다. 동시에 평가원이 최근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기도 해요. 극복하셔야 합니다.

### | 하이라이트 문장 |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

뜬금없는 정보가 나와도, 절대 당황하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읽고 있는 지문의 흐름과 연결될 거예요! ‘정보의 역할’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을이 그림을 안 줘서 갑이 강제 집행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 생각은 하고 있죠?) 사실 을이 그림을 못 준 이유가 자기 실수로 그림을 불태워서 그렇대요. 허허.. 이러면 그림을 못 주게 될 텐데, 이런 상황을 ‘이행 불능’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갑이 소송을 해도 강제 집행이 실시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럼 어떡하죠? ‘갑은 호구 잡힌 건가요?’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필연적인데, 평가원은 굳이 ‘그림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이라는 사례와 관련 없는 내용을 끌고 와서 혼란스럽게 합니다. 최근 평가원이 자주 활용하는 페이크이기도 해요. <> 표시 등으로 체크만 해놓고,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 계속 생각해야 해요! 훌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읽어 봅시다. 만약 이 소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않지만 아마 이렇게 되면 법원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리겠죠. 위에서도 말했지만 이렇게 화제의 흐름과 무관한 정보에 훌리면 안 돼요. 사례와 관련된 내용에 더 주목하셔야 합니다. 다음 문장

을 읽어 보니 이 사례에 딱 맞는 이야기네요. 그림이 불타버렸다는 이행 불능은 을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채무자, 즉 을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네요.

‘그럼 어떻게 책임질건데?’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 ‘필연적’이겠죠? 이게 사후적인 해설이 아니라 ‘불친절한 서술’에 대한 태도를 갖춘 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걸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 | 하이라이트 문장 |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화제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체크는 하되, 정답 선지 등으로 쓰일 리가 없는 정보이니 빠르게 넘어가면서 다시 흐름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 그림이 소실된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해야 해요.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때의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에 을의 승낙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라 한다.

다시 한 번 지금의 채무 불이행이 을의 실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는 정보까지 주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과실로 인한 채무 불이행도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대요. 화제인 ‘법률 효과’네요! 어떤 ‘법률 효과’일까요? 바로 계약 해제권이라는 ‘권리’였네요. 이렇게 읽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느끼시기 바랍니다. 서술이 굉장히 불친절하지만 어쨌든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렵고 비현실적으로 보이겠지만 평가원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이런 독해를 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 ‘계약 해제권’은 을의 의사 따위는 가볍게 씹을 수 있는 ‘단독 행위’라고 하네요. ‘계약 해제권’과 ‘단독 행위’라는 개념도 ‘법률 효과’라는 화제 아래로 모인다는 것. 이젠 이해되죠?

### | 하이라이트 문장 |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앞에서 ‘법률 효과’에 대한 정보가 나올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고, ‘권리’는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체크한 ‘법률 효과’의 예시였으니 이 문장을 보면서 모든 정보가 모이는 느낌을 받았어야 합니다. 결국 다 똑같은 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된다.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상회복 청구권이다.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이제 갑은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정말 불친절해요. ‘이러한 계약 해제권을 이용하여~’ 같은 부연 설명이 있었다면 훨씬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림 매매 계약과 관련된 ‘채권’(갑이 가지게 된 그림의 소유권을 청구할 권리,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과 ‘채무’(을이 그림을 인도해야 할 의무, 갑이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모두 사라지겠죠. 제가 하는 것처럼 읽는 것이 여러분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에서는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이라고 합니다. 오 이거 완전 지문의 사례에 딱 들어맞는 경우네요! 이것도 ‘이 사례처럼’과 같은 말을 넣어줬다면 이해하기 훨씬 편했겠죠. 불친절한 서술이 난이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주는 지문이네요.

아무튼 이 사례에서 갑이 이미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이행된 것 이 있다면 계약 체결 전의 상황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준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겠네요.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법률 효과’가 ‘원상회복 청구권’이라는 ‘권리’라네요. 결국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 효과’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를 이용해 갑은 돈을 돌려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채권’, 즉 새로운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와우 어렵네요. 어렵긴 한데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다양한 법률 효과’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법률 효과들을 지문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해해주면 되는 것이네요. 어렵고 제가 대단하게만 보이더라도 평가원이 어느새 이 수준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하기.’ 이런 어려운 지문뿐만 아니라 읽는 지문마다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 | 하이라이트 문장 |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 문장 바로 앞에 ‘갑의 사례처럼’이라는 말을 넣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로 불친절한 지문이라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거의 모든 문장마다 역할을 부여하면서 읽어야 해요.

###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 06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0%	10%	45%	18%	7%

① ‘실체법’의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채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정의네요. 그리고 갑이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을이 매매 대금을 청구하는 등의 청구권은 ‘채권’에 해당한다고 했으니 실체법에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건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② ‘절차법’을 물어보고 있으니 그 정의 한번 봅시다. ‘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이라네요. 그리고 갑이 이 강제 집행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했구요. 그럼 절차법에 강제 집행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겠네요.

### | 생각 심화 |

1번, 2번 선지의 경우 단순히 절차법, 실체법의 정의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정의를 바탕으로 화제의 흐름을 이해했는지까지 물어 보고 있어요. ‘청구권=채권’, ‘채권의 강제적 실현=강제 집행’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단순히 지문에서 1대1 대응을 통해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갑과 을의 사례를 통해 ‘채권’ 및 ‘강제 집행’이라는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하셨어야 하고, 이를 통해 위의 생각을 했어야 하는 거죠! 평가원이 뭘 요구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③ ‘법률 효과의 발생’ 이거 완전 화제 그 자체였는데, 이게 발생하려면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반드시 필요했었나요? 기억날리가 없으니까 ‘법률 행위’의 정의부터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선지에서 묻는 개념의 정의를 확인하는 게 필연적으로 느껴져야 해요. ‘의사 표시를 통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법률 행위의 정의였네요.

그럼 법률 행위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맞는데, 이제 중요한 건 ‘법률 효과 발생을 위해 의사 표시가 반드시 필요한가?’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선지에서는 ‘법률 행위x → 법률 효과x’를 묻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법률 행위 : 의사 표시 필수’라는 정보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잘 기억나지 않으니 지문에 나왔던 ‘법률 효과’들을 쭉 정리해 봅시다. 갑과 을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법률 효과를 알아봤으니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채권, 채무, 계약 해제권, 원상회복 청구권...’ 어 근데 ‘계약 해제권’이나 ‘원상회복 청구권’은 을이 그림을 불태워서 일어난 ‘채무 불이행’ 때문에 생긴 것이었죠?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가 아닌 을의 실수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었나요? 혹시? 하며 ‘채무 불이행’ 부분으로 가 보니 ‘의사 표시가 적용한 것이 아니라~’가 있네요. 오케이 그럼 법률 효과는 의사 표시 없이도, 즉 법률 행위 없이도 발생할 수 있네요. 답은 3번.

굉장히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시험장에서는 단 몇 초안에 해낼 수 있는 생각입니다. 이 길고 긴 해설들을 시험장에서는 빠르게 해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1등급을 넘어 만점이 나옵니다.

선지에서 묻는 것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 해제권’, ‘원상회복 청구권’과 같은 ‘법률 효과’를 설명하는 지문의 흐름까지 사례를 통해 잡아주지 못했다면 판단할 수 없는 선지였어요. 1대1 대응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자꾸 출제되고 있다는 것. 알아둡시다.

④ ‘강제 집행’의 정의죠? ‘물리력’을 보고 갑이 그림을 받기 위한 방법이었던 실체법, 절차법이 떠올라야 하고, 자연스레 그와 관련된 ‘강제 집행’을 떠올릴 수 있었겠죠. ‘물리력’이라는 어휘에 대해서도 익숙했어야 하구요.

⑤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면 무효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평가원이 자주 활용하는 페이크라고 언급했던 내용과 관련된 선지네요. 보시다시피 답이 될 리가 없죠? 화제의 흐름을 잡고, ‘그 화제를 설명하기 위해 나온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확실하게 나누면서 읽었다면 쉽게 지울 수 있겠네요.

## 07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	8%	20%	17%	48%

– 일단 ⑦과 ⑨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갑시다. ⑦은 그림을 인도해야 할 ‘을의 채무’에 해당하고, ⑨은 원상회복 청구권, 즉 을에게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갑의 채권’에 해당하네요. 이걸 정리해두고 가셨어야 합니다.

① 매도인은 판 사람이고, 매수인은 산 사람이죠? 채무가 소멸하려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매수인이 청구하고 채무를 가지고 있는 매도인이 이행해야죠. 화제를 사례에 맞춰 읽었다면 낚이지 않았을 거예요.

② ‘의사 표시 = 법률 행위 = 계약!’ ⑨은 계약, 즉 의사 표시를 통한 것이 아닌 을의 그림이 불에 타서 생긴 것이었죠? 역시 화제의 흐름을 묻는 문제입니다.

③ ⑦과 ⑨은 다른 상황에서의 법률 효과입니다. ⑦은 법률 행위인 계약에 의한 채무이고, ⑨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이니까요. ⑦이 이행된다면 애초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아 갑이 ⑨을 가지게 될 일도 없었겠죠. 화제의 흐름을 정말 집요하게 묻고 있네요. 사례와 원리를 끊임없이 불이면서 읽어 주셨어야 합니다.

④ 동일한 ‘계약’이 아니라고요! 화제의 흐름을 탔으면 둘은 다른 상황이라는 거 알 수 있다고요!!

혹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계약의 ‘효과’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계약이 야기하는 효과는 뭐죠? 그렇죠. 화제인 ‘법률 효과’죠. 그리고 우리는 ⑦이라는 법률 효과와 ⑨이라는 법률 효과가 아예 다른 법률 효과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효과를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게 아니죠.

⑤ 이건 우리가 미리 찾아둔 정보 그 자체네요.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죠? 이렇게 5번을 보자마자 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겹지만 다시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제발! ‘정보의 역할’을 토대로 ‘화제’에 그 정보들을 모아주면서 글을 읽읍시다.

## 08 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1%	6%	7%	12%	4%

– ⑨의 상황은 을의 실수로 이행 불능 상태가 되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상황이었죠. 미리 답을 생각하고 갑시다. 이 경우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을에게 책임을 물어 갑에게 계약 해제권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켰죠. 그래서 갑은 을의 의사를 무시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잡고 가 봅시다.

① 오잉 바로 답이네요?? 위의 내용이 답을 알고 작성한 것이 아닌 화제의 흐름을 타고 읽은 결과 자연스레 해낸 생각이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②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제의 흐름 속에서, 소를 제기하면 ‘실체법’에 있는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확정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⑨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도 그림의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을 이전받을 수 없겠죠. 그림 자체가 없어진 상황이니까요.

③ 갑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그림 사는데 쓴 돈을 돌려달라는 권리였습니다. 또 화제의 흐름을 묻고 있네요.

④ 원래 그림은 있었으니 계약을 한 건데, 갑이 돈 주고 나니까 을이 태워 먹은 거죠.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하지 않았어요.

⑤ 을의 잘못으로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으니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이 바로 ‘계약 해제권’이었죠. 모든 선지가 사례-원리의 쫀쫀한 붙여 읽기를 통해 화제의 흐름을 잡았는지를 묻고 있다는 점. 감이 잡히시죠?

## 09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20%	40%	23%	11%

– <보기>부터 정리해 봅시다. ‘증여’와 ‘유언’의 정의 체크하면 되겠네요. ‘증여’는 ‘의사 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문의 ‘매매 계약’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보기>의 내용을 지문의 내용과 엮어서 읽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유언’은? 의사 표시의 합치가 필요 없고,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갑의 ‘원상회복 청구권’과 비슷한 ‘단독 행위’네요. 또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매매 계약’과 공통점이 있구요. 이처럼 완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생각을 한 채로 선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급하다고 바로 뛰어 들어봤자 어차피 답 안 보여요.

① 증여, 유언, 매매 모두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였죠? <보기>를 읽으며 미리 생각했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물론 생각 못했어도 돌아가서 확인하면 되긴 해요.)

② 증여의 정의 역시 일종의 ‘계약’이므로 법률 행위, 즉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고, 유언은 아예 정의에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네요. 촉박한 시험장에서 너무 가혹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해요.

③ 변제를 묻고 있네요. 변제가 뭐였죠? 정의 찾아보니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었네요. 이렇게 정의를 찾아야 할 때 빠르게 찾기 위해서 동그라미와 밑줄을 치는 겁니다. 아무튼 매매는 당연히 변제의 의무가 있는데, 증여는요? 증여자가 이행 ‘의무’를 진다는데..?? 증여자가 이행 ‘의무’를 지면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변제’가 일어나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선지에서 물어보는 개념들의 정의만 제대로 체크해주셨으면 됩니다.

④ 이것도 미리 찾아둔 증여와 매매의 차이점이죠? <보기> 정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⑤ 얘는 증여와 유언의 정의를 바탕으로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겠어요. 모든 차이점은 정의로부터 온다!

많이 어려운 지문, 문제 맞습니다. 하지만 ‘화제와 정의’를 잡고 ‘내가 읽고 있는 이 정보의 역할’을 생각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흐름을 타며 글을 읽는 것. 이 본질적인 부분 외에 다른 건 묻지 않고 있어요. 조금은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하며 깨닫기 바랍니다. 이 이상은 제가 해드릴 수 없어요.

## 10 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4%	1%	1%	2%	12%

### | 핵심 point |

- ① 화제 check : 비문학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불친절한 서술 : 모든 지문은 하나의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소리를 하는 것 같더라도, 그 정보의 ‘역할’을 생각하며 흐름을 잡아주세요!
- ③ 사례–원리 연결 : 모든 사례는 어떠한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독해 속도를 늦추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 ④ 어휘력 : 매매, 매도, 매수, 동산, 물리력 정도의 어휘는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뜻과 예문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 ⑤ 선지에서 묻는 것 : 모든 선지 판단의 시작은 ‘선지에게 묻는 것’ 생각하기입니다. 무엇을 묻는지,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하며 ‘필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 ⑥ <보기> 정리 : <보기> 문제를 해결할 때, 선지를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보기>의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